

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 국고귀속 공고

[서울중랑우체국 공고 제2026-10호]

서울중랑우체국에서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[국고예의 귀속],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1. 국고귀속일 : 2026.8.3.(월)

2. 국고귀속대상

| 반송불능우편물 | 발송인 | 이관일 | 금 액(원)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6108101213467 | 고○속 | 2025.7.24.(금) | 200,000 |
| 6107902246205 | | | 100,000 |
| 합 계 | | | 300,000 |

3. 국고귀속 범위: 보관기간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

4. 환급기간: 공고기간 내 (2026.7.3.(금) ~ 2026.8.2.(일))

5. 환급장소: 서울중랑우체국 4층 지원과 방문

6.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
가. 실명확인증표

나. 본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
다. 본인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
1) 위임장(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
2)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랑우체국 지원과(02-2239-0514)로 연락 바랍니다.

2026년 7월 3일

서울중랑우체국장